코인대여 이용 약관

제 1 조 (목적)

이 약관은 주식회사 빗썸(이하 "회사"라 합니다)이 제공하는 신용공여(코인대여) 서비스(이하 '이 서비스')의 이용 조건 및 절차에 관한 회사와 이용자 간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약관 외 준칙)

회사는 이 약관 외에 개별 신용공여(코인대여) 서비스 이용안내(이용예시, 안내사항 등을 포함)를 통하여 이 서비스와 관련한 사항을 이용자에게 알리거나 동의를 받을 수 있으며, 이용안내 중 이용자의 동의를 받은 내용이 이 약관과 상충할 경우에는 이용안내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또한,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이나 해석에 대해서는 이용안내, 빗썸 이용약관, 관련 법령 또는 상관례를 따릅니다.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대여자산: 회사가 이용자에게 대여하는 가상자산(이하 '코인'이라고도 함)입니다.
2. 담보: 회사가 이용자에게 이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그 채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출금 또는 출고 제한, 질권 취득, 보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대상이 되는 원화 또는 코인을 말합니다.
3. 담보가치: 담보로 제공되는 원화 또는 코인의 가치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합니다.

 가. 원화: 액면금액

 나. 코인: 해당 코인의 원화환산가에서 회사가 정한 할인평가 비율을 곱한 금액이며, 할인평가 비율은 아래와 같음.

 - 스테이블코인 95%
 -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에서 공시한 시가총액 20위 코인 90%
 - 3개 이상 국내거래소 상장 코인 85%

4. 대여비율: 담보가치 대비 대여자산 및 대여수수료의 비율을 말합니다. 이용자는 대여비율을 85%의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5. 강제청산: 회사가 이용자의 추가적인 동의 없이 대여자산을 회수하거나 이용자가 제공한 담보를 처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6. 대여수수료: 이용자가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코인으로 대여자산과 동일한 종류입니다. 수수료율은 빗썸 홈페이지에서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7. 위험관리수수료: 회사가 강제청산을 할 경우 이용자가 회사에 별도로 지급하여야 하는 코인으로 대여자산과 동일한 종류입니다. 수수료율은 빗썸 홈페이지에서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4조 (대여)

① 이용자는 이 약관 및 이용안내에 동의한다는 의사표시와 함께 이 서비스를 신청하며,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이용자의 계정에 대하여 가압류·가처분 등의 보전조치 결정이 통지된 경우
2. 이용자의 계정에 대하여 압류·특별현금화명령 등의 강제집행 결정이 통지된 경우
3. 이용자의 계정에 대하여 체납처분 압류통지 또는 체납처분 착수가 있는 경우
4. 이용자가 『가상자산시장조사업무규정(금융위원회 고시)』 제3조 제1항 제3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고 그 조치가 종료되지 않은 경우
5. 이 서비스 이용이 "빗썸 이용약관" 제14조 제2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제13호, 16호, 제17호, 제18호, 제19호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② 이 서비스는 대여자산을 이용자의 계정에 지급함으로써 실행됩니다. 대여자산은 담보가치에서 대여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응하는 이용자가 지정한 코인입니다.

> *예시*
> * 담보가치 1억, 대여비율이 85%인 경우, 대여자산은 "8,500만원어치 이용자가 지정한 코인"
> * 담보가치 1억, 대여비율이 80%인 경우, 대여자산은 "8,000만원어치 이용자가 지정한 코인"

③ 회사는 상환기간을 정하고 이용자가 이를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도록 [빗썸 홈페이지 (https://www.bithumb.com/react/lending-plus/intro)] 에 공시합니다. 상환기간은 연장이 가능하지만 연장기간을 포함하여 최대 3개월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④ 담보는 거래와 출금·출고가 불가능합니다. 이는 이 서비스 운영에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이

용자는 회사가 임의적으로 출금·출고 차단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제5조 (상환)

① 이용자는 이 서비스 상환만기일에 대여자산과 대여수수료를 상환하여야 합니다.

② 이용자는 언제든지 중도상환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용자는 대여자산과 상환일 기준으로 산정된 대여수수료를 상환하여야 합니다.

③ 본 조의 상환은 이용자의 계정에서 회사가 출고하는 방법으로 진행됩니다.

제6조 (기한 이익의 상실)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이 서비스의 기한의 이익을 즉시 상실합니다.

1. 대여비율이 95%에 도달한 경우
2. 이 약관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7조 (강제청산)

① 이용자가 상환기일 내에 상환하지 않거나 이 약관 제6조의 기한 이익 상실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강제청산이 진행됩니다.

② 강제청산은 아래와 같이 진행되며, 대여자산과 대여수수료 및 위험관리수수료가 즉시 상환됩니다.

구분	상환방법	
	1순위	2순위
대여자산과 동종의 코인을 보유한 경우	동종 코인 상환	-
대여자산과 동종의 코인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	담보가 원화인 경우, 대여자산과 동종 코인을 매수하여 상환	담보가 코인인 경우, 이를 매도 후 대여자산과 동종 코인을 매수하여 상환

③ 이용자의 담보 또는 대여자산을 시장가로 매도·매수할 경우 해당 코인의 시세가 다른 가상자산거래소들의 시세에 비하여 왜곡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이를 대비하고 다

른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도미노 청산 방지 시스템"을 도입하여 운영합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설명은 개별 신용공여·대여 서비스의 "이용안내"를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④ 회사는 강제청산을 진행할 경우 이용자에게 사전에 통지하기로 하며, 이 약관 제8조 제2항 각 호의 방법을 따릅니다.

제8조 (위험 사실의 고지)

① 회사는 대여비율이 88%, 92%에 도달 시 강제청산 위험을 각 안내하며, 이용자는 담보를 추가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용자는 추가 담보를 제공한다 하더라도 잔여 대여비율과 관계없이 가상자산을 추가 대여할 수는 없습니다.

② 회사는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두 가지 이상의 방법을 통하여 전항에서 정한 구간마다 해당 시점의 대여비율 및 강제청산의 위험을 안내합니다.

1. 전화
2.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3. 문자메시지
4. 팝업
5.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푸시 알림
6. 이메일

제9조 (유의사항)

① 대여자산의 시세가 상승할 경우 상환 시 동일한 수량의 가상자산을 반환하기 위하여 경제적 부담이 증가할 수 있고 최종적으로 손실을 입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② 담보가치의 변동 등으로 이용자의 담보 처분 후에도 부족금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때, 회사는 부족금에 대한 청구절차를 별도로 안내합니다.

본 약관은 2026년 12월 7일부터 적용됩니다.